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5. 9 선고 2022가단23800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새미로

담당변호사 김성진, 김연정, 김제현, 임승현, 임경

피고1. B

2. C

변론 종결2023. 3. 14.

판결 선고2023. 5. 9.

주 문

1. 가. 피고 B과 D 사이에 2019. 9. 24. 경기 파주시 E 임야 3224m² 중 3224분의 2505 지분에 관하여 한 매매계약 및 2019. 9. 26. 경기 파주시 E 임야 3224m² 중 3224분의 330 지분에 관하여 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D에게,

1) 위 가.항 기재 토지 중 3224분의 2505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9. 9. 26.접수 제693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위 가.항 기재 토지 중 3224분의 330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9. 9. 27. 접수 제697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피고 C는 D에게 위 가.항 기재 토지 중 3224분의 2505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20. 2. 11. 접수 제107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경 D과 사이에 D의 F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회사 수수료 반환채무 지급보증을 위하여 보험기간 2017. 9. 1.부터 2020. 4. 30., 계약금액 1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F 주식회사는 2020. 7. 22. 원고에게 보험사고 발생을 통지하여 2020. 8. 26. 원고로부터 8,231,947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21. 8. 24. D을 상대로 위 가.항 기재 보증약정과 관련한 대위변제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차전289491호)을 신청하여 "D은 원고에게 8,272,540원 및 그 중 8,231,947원에 대하여 2020. 9. 26.부터 2021. 12. 21.까지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22. 1. 4. 확정되었다.

다. D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토지의 3224분의 2835 지분 중 3224분의 2505 지분을 2019. 9. 24. 피고 B에게 거래가액 63,000,000원에 매도하고 2019. 9.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위 토지의 나머지 3224분의 330 지분에 대하여 2019. 9. 27. 피고 B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토지 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각 지분은 '2505 지분' 및 '330 지분'이라 하며, D과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을 각 '이 사건

매매계약',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라. 피고 B은 2020. 2. 11. 250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에게 2020. 2. 1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2020. 8. 26.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D 사이의 보증약정은 2017. 9.경 체결되었고, 위 보증약정은 D이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동안 발생하는 보험수수료 반환채무를 지급보증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피고 B과의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 당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명확히 존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D이 무자력인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영등포구, 법원행정처, G기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등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D의 금융기관 채무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 이전인 2018년도 후반경부터 연체되어 있는바,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D의 사해의사 역시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인 피고 B 및 전득자인 피고 C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은 컨설팅업을 하는 H의 소개로 이 사건 토지지분을 매수하였을 뿐이고 D의 채무관계에 관하여는 아는 바가 없었고,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지분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 후 피고 B에게서 위 지분을 매수한 것에 불과하여 D과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피고 B이 선의의 수익자이고 피고 C가 선의의 전득자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을가 제1 내지 10호증, 을나 제1, 2호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과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은 그 금액이 6,300만 원, 830만 원 정도로 상당한 금액임에도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지 않고 체결되었고, 피고 B이 D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에 관하여도 D이 수기로 작성한 영수증(을가 제8호증)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피고 C 역시 피고 B과의 매매예약 경위에 관하여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공유지분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지 않고 양도되었는데, 피고 B은 D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일면식이 없는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매수하거나, D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가등기를 설정하게 된 경위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원고와 D 사이의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 체결 당시 D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위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의 체결로써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과 D 사이에 2019. 9. 24. 2505 지분에 관하여 한 매매계약 및 2019. 9. 26. 330 지분에 관하여 한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 B은 D에게, 2505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9. 9. 26. 접수 제693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30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9. 9. 27. 접수 제697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전득자는 피고 C는 D에게 2505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20. 2. 11. 접수 제107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¹⁾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신세아

1)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이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인 반면, 가액배상을 할 경우 원물반환의 경우와는 달리 취소채권자가 자신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하여 이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을 자신의 채권과 상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자신의 피보전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어 이를 제한적으로 운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만일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구하는 때에도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 범위 내에서만 원상회복을 명하게 되면 부동산의 시가가 변동될 때마다 공동담보로 회복되는 재산이 달라지게 되어 부당하고, 수익자로 하여금 매번 부동산의 시가가 변동될 때마다 채무자의 공동담보액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채권최고액을 조정하라는 명을 내릴 수도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원물반환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22. 6. 15. 선고
2021나2037480 판결 참조).